



공정위, 『2003년 주요 업무』 국회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0. 8. 「2003년 공정위 주요 업무」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공정위의 2003년도 업무추진의 기본방향은 시장경제원리가 우리 경제 전반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시장의 공정성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첫째,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혁하여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둘째,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하여 법인체로서 대기업의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독립경영 체제로의 이행을 유도하며, 셋째, 중소·중견기업의 경쟁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에게 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제공하고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넷째, 소비자주권의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 역할을 강화하고 소비자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소비자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공정위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쟁적 시장환경의 조성

카르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시장지배력 남용 등 경쟁제한적 기업관행을 철저히 차단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였다.

(1) 카르텔(담합)의 차단

철근제조 9개사 및 시멘트제조 7개사 등의 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조치하고,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원천적으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카르텔의 차단에 행정역량을 집중하며, 담합행위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제도를 공정거래분야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혁

경쟁제한적 규제를 3개 주요유형으로 분류하여 존속필요성보다 폐해가 큰 규제를 선별하여 정리하고, 12월중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3)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심사 강화 및 심사제도의 선진화

독과점 폐해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을 시정하는 한편, 기업결합심사제도를 개선하여 독과점 형성과 관련된 실제적인 심사는 강화하는 반면, 절차적인 부담은 완화(공



정거래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4) 산업별 시장개선대책의 지속적 추진

금년에는 전력, 은행·할부금융, 인터넷 쇼핑물, 주상복합건물 건설, 광고, 전문자격사 6개 분야에 대해 추진하였다.

(5) 신문판매시장의 불공정행위 시정

사업자단체에 의한 자율감시기간 동안 신문판매시장의 거래질서가 악화되어 신문판매고시 위반사건을 직접 공정위가 처리할 수 있도록 신문판매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하였고, 전국 신문판매시장의 거래질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문 리서치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다.

2. 대기업집단 시책의 추진

투명·독립경영, 공정경쟁체제가 확립될 때까지 대기업집단 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시장친화적 제도개선과 함께 의식과 관행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1) 「시장개혁 3개년 계획」 수립·추진

명확한 비전과 목표아래 시장참여자들이 동참하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T/F 작업결과를 토대로 재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확정하였고, 향후 시장의 투명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시장상황을 측정하고 목표달성도를 점검

하였다.

그 동안 논의된 과제들 중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단기과제들을 중심으로 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현재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20개 중 결합(연결) 부채비율 100% 미만인 5개 기업집단 등을 제외한 15개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고,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을 토대로 출자한도(순자산의 25%)를 초과한 범위만 회사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하는 등 '02. 4월부터 본격 시행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였고, 「시장개혁 3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시장개혁 중장기 비전의 큰 틀 속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3) 지주회사제도의 보완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독립경영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주회사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자회사지분율·부채비율 요건 등 지배력확장 억제외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지주회사 설립·전환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4)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공개

대기업집단 총수·친인척 및 계열회사 지분 등 소유지배구조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주 및 채권자 등에 의한 시장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시장개혁 T/F 논의 결과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매트릭스 형태로 알기 쉽게 공개할 계획이다.

(5)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피해 차단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가 완화('02. 1월)된 이후 의결권행사 실태를 점검하고,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회사가 사금고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이용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였다.

(6) 부당내부거래의 철저한 차단

지난 3. 5. 일괄하여 예고한 금년도 조사계획에 따라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하였고,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04. 2월 만료 예정인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의 시한을 3년간 연장할 계획이다(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영).

3.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하도급거래 관련 대금지불체계 및 관행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12만개 영세가맹점 보호를 위해 '02년도에 제정된 가맹사업거래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및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자의 자립기반을 확보하며, 정부위탁업무 수

행을 빌미로 영세·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업자단체의 각종 경쟁제한행위 시정 및 단체수의계약 품목 축소를 통한 중소기업간 경쟁을 활성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과의 공정한 기반 위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4. 소비자주권의 확보를 위한 기반 확충

(1)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와 피해방지 강화

소비자선택에 핵심적인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중요정보공개제도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적 경험, 전문가·단체의 추천·보증 형식을 통한 부당광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하였으며, 소비자피해 빈발분야인 학원·학습지 등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 전자상거래·특수거래분야의 소비자권의 제고

전자상거래 전단계에서의 철저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 추진과 다단계판매업자 및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작년에 개·제정된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스팸메일 수신거부 등록사이트(노스팸 사이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장치를 보강하고, 동 사이트에 등록된 소비자의 스팸메일 수신



거부의사를 통신판매업체에 고지하였으며, 다단계판매 공제조합 설립·운영 등 소비자피해 예방·구제 기반을 확충하였다.

템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영).

(3) 표준약관 보급의 확대와 불공정약관의 시정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수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표준약관을 적극 보급하였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으며, 현재 사업자(단체)만으로 국한되어 있는 표준약관 심사제청권을 소비자단체에게도 부여하는 방향으로 약관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4) 그룹별 소비자시책의 지속적 추진

취약 소비자그룹의 소비자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룹별 소비자시책을 추진(6개그룹 8개분야)하였다.

(5)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제도의 개선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사법적 구제시스

5. 경쟁정책의 국제협력 강화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경쟁정책 논의가 개별국가 차원을 넘어 국제규범제정 논의로 진행됨에 따라 국익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정보교환 및 경쟁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미국·EU 등 주요국과의 정례적인 양자협의회 개최 등 협력체제를 공고화하였다. 또한 「2003 경쟁정책 국제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 개도국과 체제 전환국에게 우리의 경험을 전수하는 등 한국의 위상을 높임과 더불어, 내년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공정거래위원장회의(ICN) 제3차 연차총회 개최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OECD 제안에 따라 「OECD 아시아지역 경쟁센터」 국내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외국기업에게도 우리 법을 적극 적용, 외국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로부터 국내기업과 소비자를 적극 보호하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이 10. 22(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 9.부터 구성·운

영중인 시장개혁 민관합동 T/F에서 논의되었던 시장개혁과제들 중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단기과제들을 중심으로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주회사제도 보완 등 4개 시장개혁관련 과제와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규정 보완 등 5개 기타 법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동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금년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주회사제도를 보완하여 ▶부채비율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일부에 대해서만 유예기간이 인정되고 있는 전환유형을 모든 유형으로 확대 ▶사업관련 손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처분유예기간을 새로이 인정(2년) ▶비상장 합작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자회사간 출자 금지 ▶자회사의 사업관련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신설하고, 기업결합심사제도를 개선하여 ▶현행 사후신고 대상인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을 기업결합 완료전 신고로 전환 ▶심사연장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 ▶1차신고 후 추가지분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재신고를 의무화 ▶피취득회사의 규모가 소규모일 경우 신고의무 면제 ▶계열사간 임원겸임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이 '04. 2. 4. 만료 예정으로 동 요

구권 없이는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의 효과적 조사가 어려우므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을 3년간 연장기로 하였고, 손해배상청구제도를 개선하여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거치지 않으면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 재판상 주장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무과실책임 규정을 고의·과실 추정조항으로 변경 ▶관련증거, 변론취지 등을 감안하여 법원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설하였으며,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현재 과징금 상한액이 선진외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이므로 과징금 최고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5%에서 10%로 인상 ▶처벌 감면 대상자의 범위에 자발적 조사협조자 추가 ▶내부지침으로 운영중인 공동행위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련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에 따라 공정거래법상의 “법위반 사실의 공표”가 포함된 조항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로 일괄 수정하였고, 피심인에 대하여 법률·경영자문을 하고 있거나 고문으로 있는 경우와 당해사건에 대해 심사관 역할을 한 경우를 제척사유에 추가하였으며, 조사권 남용금지, 조사연기 신청 조항 및 국세기본법을 참고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회사 등의 과징금 연대납부책임 규정을 신설하였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 분야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을 2003. 10. 21.자로 고시·시행하였다.

공정위는 2002. 7. 1.부터 시행중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내용 중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자의 자발적 준수를 통하여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은 일반사항과 권고사항의 두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전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예시 및 사업자의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후자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가 신용카드, 휴대폰, 유선전화 등을 통하여 인터넷 등에서 결제하는 경우에 결제가 이루어지면 전자우편, 전화, SMS, 팩스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즉시 통지토록 하고, 통신업자가 월별 이용요금을 고지할 때 인터넷 등에서의 결제내역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둘째 ▶후불식 전화결제(유무선 전화결제)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권고로서, 청소년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이 후불식 전화결제서비스의 사용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해결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분쟁해결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며, 이용요금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해결 전까지 요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그 사유로 통화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셋째 ▶인터넷 쇼핑물 등에서 적립금 제도를 악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이용조건, 이용기간, 소멸조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토록 하고, 행사 등을 통하여 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의 화면에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였고, 사업자의 적립금 제도 폐지 등으로 소비자가 더 이상 적립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리 제시한 조건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보상하도록 하였다.

넷째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를 함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와 약정하거나 소



비자에게 고지하는 경우 단순히 약관의 일부 조항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동의서명을 받거나 사이트의 하단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팝업화면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통신판매업자와의 연대책임을 면할 수 있고,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자인지 불분명한 경우 구별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공정위의 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공정위가 해당 사이트의 신뢰성을 보증하거나 우수 사이버몰로 인정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표준약관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여섯째 ▶이용약관 개정시 최소 7일 전부터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

면을 통해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를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최소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히 비교하여 표시하도록 하였고, 기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및 분쟁처리에 필요한 인력·설비의 방치행위를 예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자가 법에 따라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권고사항), 청약철회의 경우에 재화 등의 구매 배송비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여 배송비 관련 분쟁의 소지를 줄이도록 하였다(권고사항).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전문은 본지 '부록(83면 이하)' 을 참고하기 바람

전국 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리서치(주)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동안 추진하였던 전국 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국의 구독자를 대상으로 실태파악을 한 결과, 우리나라 신문사들은 2000년 7월(신문판매고시 시행 1년전) 이후 신규독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체 신규독자 중 77.5%에 대하여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하였고, 전체 신규독자 중 63.4%(경

품·무가지 수령자의 81.8%)에 대해서는 신문판매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들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하는 신규독자 비율은 고시시행(01. 7. 1) 전후 1년간씩을 비교하면, 고시시행 이전보다 그 이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0%→65%), 금년 고시개정(03. 5. 27) 이전보다 그 이후에 증가(64%→74.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흥개발지역의 경우는 전체적인 전국 상황과 비교하여 고시 규정에 위배하여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하는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금번 용역에서 지국장 등 지국 운영 관계자에 대해서도 실태파악을 추진하였는데, 실태파악 결과, 지국이 경품제공 등 판촉활동을 결정하는 데에는 지국의 자체결정과 본사의 권유가 거의 동일한 비율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국운영 관계자 중 80.8%는 경품 및 무가

지 제공이 부수확장에는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지국운영 관계자 중 53.1%는 경품 및 무가지를 통한 독자확보가 지국의 수익에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국운영 관계자들은 정부에 대하여 경품·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 판촉활동 근절 및 공동배달제 실시 등을 통한 유통질서의 강력한 규제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금번 용역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신문판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한국전자상거래 및통신판매협회가 심사·청구한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을 '03. 10. 10. 개정·승인하였다.

공정위는 기존의 표준약관만으로는 사업자의 영업현실과 소비자보호를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02. 7. 1. 제정·시행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내용을 표준약관에 충실히 반영하고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 현황을 고려하여 통신판매협회에서 심사청구한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하여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 개정·승인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동 표준약관 개정을 계기로 전

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과 건전한 거래질서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 청약철회, 적립금, 회원등록의 말소,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번 표준약관이 주로 인터넷 쇼핑물 등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인터넷 콘텐츠(인터넷 게임, 인터넷 교육 등) 분야에 대해서도 표준약관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개정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 ▶구매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재화 등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성질의 재화 등의 경우에도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 재화 등의 공급과 관련하여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 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2영업일 이내에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셋째, 환급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구매한 신청한 재화 등이 품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넷째, 서비스의 중단·변경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 업체간의 통·폐합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명시하고, 서비스 중단 및 변경에 따른 손해 발생시 이에 따른 배상책임 및 입증책임을 “몰”이 지도록 명시하였으며, 아울러, 마일리지 및 적립금 등의 경우에도 “몰”이 사전에 서비스 중단·변경에 따른 보상기준 등을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 지급토록 하였다.

다섯째, 회원등록과 관련하여 ▶“몰”이 회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회원에게 통지토록 하고 말소 전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토록 하였고, 회원에 대한 통지에 있어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하되, 계약해지 등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미성년자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판매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상품판매와 대금청구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미성년자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토록 하였다.

일곱째, 약관의 명시와 개정과 관련하여 ▶약관의 내용 및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소재지, 주소,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이용자가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하도록 하였고,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하도록 하되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용자들의 약관 동의에 앞서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 중요한 내용은 별도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통해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도록 하는 약관법상의 설명의무를 명시하였다.

기타 구매신청 후 주문완료 이전에 이용자가 취소·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보증토록 하였고, “몰”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 수집시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를 필수정보에 포함시켰으며, 이용자의 대금지급방법에 인터넷뱅킹, 이동전화에 의한 결제 등을 추가하였다.

※ 「개정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전문은 본지 '부록(92면 이하)'을 참고하기 바람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회사에 대한 조치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 10. 15. 11개 기업집단 21개사의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6개 기업집단 11개사에 의결권제한명령(200,893백만원), 1개사에 주식처분명령(1,068백만원), 1개사에 과징금 부과(76.1백만원) 및 7개 기업집단 9개사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였다.

공정위는 매년 4월말까지 대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는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11개 기업집단 소속 21개회사가 예외인정 받던 주식을 예외인정시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소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거나,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타회사 주식을 신규취득 함으로써 출자총액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회사에 대한 조치기준을 살펴보면 2001. 4. 1.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예외인정시한이 만료된 이후에도 해소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여 법을 위반하였고, 2002. 4. 1. 신규지정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해소시한(2003. 3. 31) 이내에 해소하지 못한 경우 의결권제한명령을 내리고, 주식처분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2002. 4. 1~2003. 3. 31. 기간중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을 신규취득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식처분명령 및 과징금 부과, 2002. 4. 1. 이후 피출자회사의 법정관리에 따라 출자전환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을 위반한 신규취득 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서 경미하고, 조치일 현재까지 출자한도 초과주식을 완전 해소한 경우는 경고 조치



를 하였다.

공정위는 금번에 의결권제한명령을 받은 11개사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결권제한 대상주식을 통지토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에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주식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회사는 시정명령의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2003. 9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공정위는 2003년 9월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21조제3항에 의거하여 2003년 10월 1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3년 9월중 15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3. 10. 1. 현재 348개로 전월과 동일하고,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을 제외한 33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3. 9. 1. 현재 487개로 1개사가 감소하여 공정거래법상 4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수는 2003. 9. 1. 현재 836개에서 2003. 9월중 3개사가 신규편입 되고, 4개사가 계열제외 되어 2003. 10. 1. 현재 835개로 1개사가 감소하였다.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인 「한국수자원공사」가 2003. 9. 3일자로 지정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49개에서 48개로 감소)

[2003. 9월중 계열사 변동 개요]

기업집단	2003. 9. 1.	편 입			제 외						증감	2003. 10. 1.
		회사 설립	주식취득 및 기타	계	합병	매각	청산	친족 분리	기타	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15개)	348	-	1	1	-	-	1	-	-	1	-	348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48개) ¹⁾	836	-	2	2	-	-	2	-	1	3	△1	835

※ 주 1) 15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포함



[2003. 9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3개사(주식취득 : 2, 기타 : 1)

◆ 제외 : 4개사(청산종결 : 3, 지정제외 : 1)

기업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 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 유
케이티	한림창업투자(주)	벤처창업투자	주식취득	-	-	-
대 성	액츠투자자문(주)	투자자문	주식취득	-	-	-
동 양	마이클럽닷컴 코리아(주)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제조	기타	-	-	-
현 대 자동차	-	-	-	현대캐피탈 자산관리(주)	기타 금융업	청산종결
한국수자원 공 사	-	-	-	(주)한국수자원 관리공단	수로 댐 및 급배수공사	청산종결
코오롱	-	-	-	(주)이앤티처	정보통신관련 투자컨설팅	청산종결

※ 2003. 9. 3일자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인 「한국수자원공사」 지정제외



공정위 인사동향

발령

2003. 9. 23.

- 식품안전대책기획단 파견근무를 명함.
(파견기간 : 2003. 9. 23~2004. 12. 31)

서기관 장상진

2003. 10. 1.

- 3급(부이사관) 대우에 명함.

서기관 권성옥(감사담당관)

서기관 최정호(하도급1과장)

서기관 정진영(조사과장)

- 4급(서기관) 대우에 명함.

행정사무관 권영익

2003. 10. 15.

-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부산광역시청 근무를 명함.

행정사무관 이상철(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 행정사무관에 임함.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 단체과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사무관 이경만(부산광역시청)

전보

2003. 9. 24.

4~5급 공무원 전보

-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실(실장) 근무를 명함.

서기관 이필현(공보관실)

5급 공무원 전보

- 독점국 기업집단과 근무를 명함.

행정사무관 이승규(기업결합과)

- 독점국 기업결합과 근무를 명함.

행정사무관 김문식(조사기획과)

- 조사국 조사기획과 근무를 명함.

행정사무관 황원철(기업집단과)

2003. 10. 15.

- 경쟁국 공동행위과 근무를 명함.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지도과장에 보함.

행정사무관 김신영(경쟁국 단체과)

행정사무관 강도영(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